

레이와(令和)2년3월17일

출입국재류관리청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창구 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제반 정세를  
감안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감염확대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재류신청 창구의 혼잡  
완화 대책으로서 3월 또는 4월(주의 1) 중에 재류기간  
만료일(주의 2)을 맞이하는 재류 외국인(재류자격  
「단기체재」 및 「특정활동(출국준비기간)」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은 제외)의 재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및 재류기간 갱신 허가신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의 재류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후 까지  
접수를 받아 드립니다.

(※ 주의 1) 4월중에 재류기간 만료일을 맞이하는 분에 대해  
서도 새로이 취급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의 2) 일본에서 출생한 분 등 3월 또는 4월중에 재류자  
격 취득신청을 해야하는 분도 포함합니다.